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80-14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어린이집용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2014. 6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ONTENTS

제1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요 _ 1

1. 목적 ····· 3
2. 법적 근거 ····· 3
3.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 ····· 3
4. 지도·점검 업무절차 ····· 4

제2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_ 5

1. 지도·점검 일반절차 ····· 7
2. 지도·점검 대상 및 시설 선정 등 ····· 8
3. 지도·점검반의 구성 ····· 9
4. 지도·점검 실시 ····· 9

제3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 처분 _ 15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조치 ····· 18
2. 행정처분 ····· 19
3. 과태료 처분 ····· 22
4. 위반사실 공표 ····· 23

제4장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_ 27

1. 행정심판 ····· 29
2. 행정소송 ····· 29

▸참고 자료 / 31

1. 영역별 지도·점검 항목 ····· 33
2. 지도점검 및 처분의 법적근거 ····· 47
3. 지도점검 항목별 행정처분 내용 ····· 75
4. 어린이집 지도점검 자체 점검표 ····· 78

어린이집용

제1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요

1. 목적/ 3
2. 법적 근거 / 3
3.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 / 3
4. 지도·점검 업무 절차 / 4

제1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요

1 목 적

- 영유아보육법,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등 영유아보육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 부적정시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
- 비용 및 보조금이 법령 및 각종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등 수급권 보호

2 법적 근거

구 분		현지점검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명단 공표	벌 칙
주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좌동	좌동	법무부
법적 근거	영유아 보육법	제41조, 제42조	제44조부터 제47조	제56조	제49조의3	제54조 및 제55조
	관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	보조금관리에관한 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

-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법규 준수 여부
- 보육교직원 임면 및 배치기준 법규 준수 여부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규 준수 여부
- 최근 도입 또는 강화된 제도를 통해 부과된 의무사항 이행여부
  * 특별활동, 어린이집 공시제도,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영유아안전관리시스템 등
- 사회적으로 제기된 사항 등

4 지도·점검 업무절차

현지점검	계획 수립	· 행정조사기본법, 영유아보육사업 안내 등에서 정한바 에 따라 수립
	대상 선정	· 점검의 실효성 · 시급성 · 조사여건 등을 감안 선정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수·구청장 주관으로 실시
	결과 보고	· 시·군·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
행정처분	부정수급 금액 및 행정처분내역 산출 · 보고	· 시·군·구청장은 점검결과를 근거로 부정수급액 및 행정처분 내역 등을 산출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행정처분	· 행정처분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회 안내 · 과태료부과 : 시장 · 군수 · 구청장
	행정쟁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기 ※ 90일 이내 직상급기관 · 행정소송 : 행정처분 시정을 관할 법원에 제기
사후관리	명단 공표	· 시·군·구청장은 매분기 1회 불법 시설(자) 명단 공표
	이력관리	· 행정처분 시설의 대표자 및 불법행위 관련자 이력관리
	고 발	·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관 · 고의·상습 법 위반 자 등

어린이집용

제2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1. 지도·점검 일반절차/ 7
2. 지도·점검 내용, 대상 및 시설 선정 등 / 8
3. 지도·점검반의 구성 / 9
4. 지도·점검 실시 / 9

제2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1 지도·점검 일반절차

정기·특별 점검	주요 내용	수시(긴급)점검
지도·점검 계획수립	• 어린이집 수, 점검기간, 점검항목 및 착안사항 등 포함	지도·점검 계획수립
점검반 구성	• 보육 담당 공무원의 업무여건에 따라 점검반 구성	점검반 구성
사전 통보	• 점검 시작 7일전에 점검목적과 전체적인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	불시점검 원칙 (당일통보)
어린이집 자체점검	• 정기·특별 지도점검에 앞서 어린이집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 자체점검표를 지자체 제출(사본은 어린이집에서 보관)	
현장점검	• 정기·특별 지도점검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 수시(긴급) 점검은 민원·신고 내용외에도 급·간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점검을 병행	현장점검
행정조치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행정조치

2 지도·점검 대상 및 시설 선정 등

가. 점검대상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41 조 및 제42조
-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자, 그 외 불법부당행위 관련자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나. 현지 지도·점검의 종류·대상·내용

구분	정기점검	특별(기획)점검	수시(긴급) 점검
점검 주체	① 시·도 ② 시·군·구청장	① 보건복지부 ② 시도 및 시·군·구청장 (이하 '지자체')	좌 동
점검 대상	① 전년도 점검 시설중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시설 ② 익년도 평가인증 대상 시설 ③ 법 위반 의심시설 (모니터링 발굴)	① 특정분야 (보조금, 안전 등) 점검을 위해 선정된 시설	① 공익신고 시설 ② 민원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③ 타 기관 의뢰 시설
점검 내용	① 전년도 시정·변경명령사항 이행여부 ② 평가인증의 기본 확인 사항 ③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종사자 관리, 건강·영양·안전 ④ 모니터링 의심사항 ⑤ 최근 부과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	① 계획된 특정 분야 중심 "모니터링 등"	① 민원 및 물의를 일으킨 사항 ② 급·간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점검 병행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1년간 정기·특별 점검대상에서 제외함. 단 민원제보·언론보도 등 문제발생시 적용 제외
  -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인증규모별 상위 5%)
  - 선행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3 지도·점검반의 구성

- 점검반은 **2명 이상 구성을 원칙으로 함.**
  - 점검의 종류, 시설의 특성, 점검 대상기간, 점검사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점검 대상과 친인척, 학연, 지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력은 제외**
-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합동점검 또는 교차점검을 권장
  - 보건소 등 관련 부서(기관, 단체)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점검 실시
  -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4 지도·점검 실시

가. 지도점검 절차

① 현지 점검의 사전 통지

- **정기·특별** 점검 : **점검개시 7일전**에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수시 점검 : 점검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 등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

② 어린이집 자체 점검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전에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 제출**

☞ 참고자료 3. 어린이집 지도점검 자체 점검표 양식 사용

③ 점검의 착수

- 주요 점검사항

진행방향	확인항목	착안사항
현 관	인사 나누기	- 점검자 소개 및 방문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 점검자 증표(조사명령서 또는 공무원 증 등) 제시
	어린이집 인가증 게시 여부 확인	- 현관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여부
	보육료 비용수납 게시물 확인	- 현관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보육료 수납한도액 게시 여부
사무실	원장 등 관계인 면담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목적 소개 - 점검장 위치, 서류준비 및 점검사항 협조 당부 - 자체 지도점검(체크리스트) 실시현황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 ※ 필요한 경우에 실시	- 필요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각종 정보 확인 ※ 어린이집 정보, 아동확인, 보조금 지급여부 등 필요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보육실 점검	보육실 입구 사진부착 여부 및 보육현황 확인	- 보육실 입구 보육아동, 교사 사진 부착 여부 확인 - 서류상 인원 수와 다를 경우 실제 보육아동 확인 - 점검 중에는 가급적 조용히 걷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보육 아동이 있는 시간에 보육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담당 보육교사에게 “선생님 잠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 후 들어간다. - 가급적 교사에게 아동이름을 적어주도록 요청하여 확인
	보육실 안전·위생 관리 점검	- 화장실, 침구류 청결 등 보육환경 적정여부 확인 - 위해물품 노출 여부 확인 등
보육실 외 점검	복도와 계단의 안전 관리, 놀이터 시설안전, 지하실 및 옥상 입구, 비상재해 대피로 확인	- 복도와 계단 등에 물품 적치 여부 확인 - 소화기,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확인 - 놀이터 안전 확인 - 지하실 및 옥상 입구 차단 확인 - 비상대피로 확인 및 비상대피로 도면 게시 여부 확인 **(차단 또는 적치물 비치여부)**

진행방향	확인항목	착안사항
조리실 점검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게시 여부 확인	-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주방 내 게시 확인 ※ 조리사 자격증은 집단급식소 신고시설, 영양사는 100인이상 시설에만 해당됨
	식단표와 해당 일자의 메뉴 일치여부 확인	- 해당 월(또는 주간) 식단표 게시 및 지도점검 일자의 메뉴 일치 여부 확인
	식자재 유통기한 확인 및 상태 확인	- 냉장고 및 식자재 보관 장소에 보관 중인 식재료의 보관 상태 확인
	조리실, 조리도구, 식기 청결 상태 및 취사부 위생복, 위생모 착용 여부	- 조리실 내 조리도구, 식기, 환기구 등 전반적인 청결상태 확인 - 취사부 위생복, 위생모 착용 및 청결상태 확인
차량 확인	통학차량 필수요소 확인	- 통학차량 신고필증, 어린이 보호표지(앞,뒤),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영아용 보호장구, 금연스티커 부착여부 등
점검장	어린이집 운영일반	- 연령별 반편성 관련 서류 및 교사 서류 확인(실제 보육아동과 보육교사와의 대조) - 운영시간 및 취약보육 관련 운영일지 확인 - 반별 보육일지, 원아활동수첩 등 확인 - 신청자 명부와 입소자 순서 관련 서류 확인 - 보험가입 관련서류 확인 - 종사자 성범죄 및 범죄경력 조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련 서류 확인 * '12년부터 부모협동어린이집 제외하고 모든 어린이집 운영 의무 -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 확인 - 보육의 우선제공 여부 확인
	재무회계	- 예·결산 서류 확인 - 어린이집운영 관련 계좌 확인 - 입출금 관련 증빙내역 적정 여부 확인 (*간이 영수증 사용 자제, 체크카드 영수증 첨부 지도) - 급·간식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관리 확인 - 퇴직적립금 적립 여부 확인 - 보육료 적정수납 여부 확인 -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등 초과 수납여부 확인 - 아이사랑카드 결제현황 확인 - 별도 개인계좌 사용여부 확인

진행방향	확인항목	착안사항
점검장	보육교직원 및 아동관리	-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이력서 및 자격증 확인 - 보육교직원 근로계약서 확인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적정여부 및 퇴직 보육교사 인사관리 서류 확인 - 보수 및 직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보육아동 입퇴소 관리 서류 확인 - 원장으로부터 이용아동 연명부(명단)를 받아, 결석 아동이나 허위등록 의심 아동의 경우는 해당 부모 또는 교사(퇴직 교사 포함)에게 확인하거나 일지, 생활기록부, 소지품 등 확인
	안전·위생관리	- 실내 안전관리 서류 확인 - 놀이터 안전관리 서류 확인 - 소방점검 및 소방훈련 서류 확인 - 소독일지, 소독신고필증 서류 확인 - 실내 공기질 관리 서류 확인(해당시설) - 식단 및 원산지 표시 서류 확인 - 보육교직원 및 보육아동 건강진단 서류 확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확인) -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신고 유무 확인 - 차량 등록증 확인(임대여부) - 차량 보험 서류 확인 - 생명·신체피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여부 확인 (안전공제회 가입의무)
사무실	원장 면담	- 지도점검 총평 및 협조에 대한 인사전달 - 위반사항에 대해 상세히 확인을 하되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도록 유의 - 점검 종료

나. 지도점검 진행 방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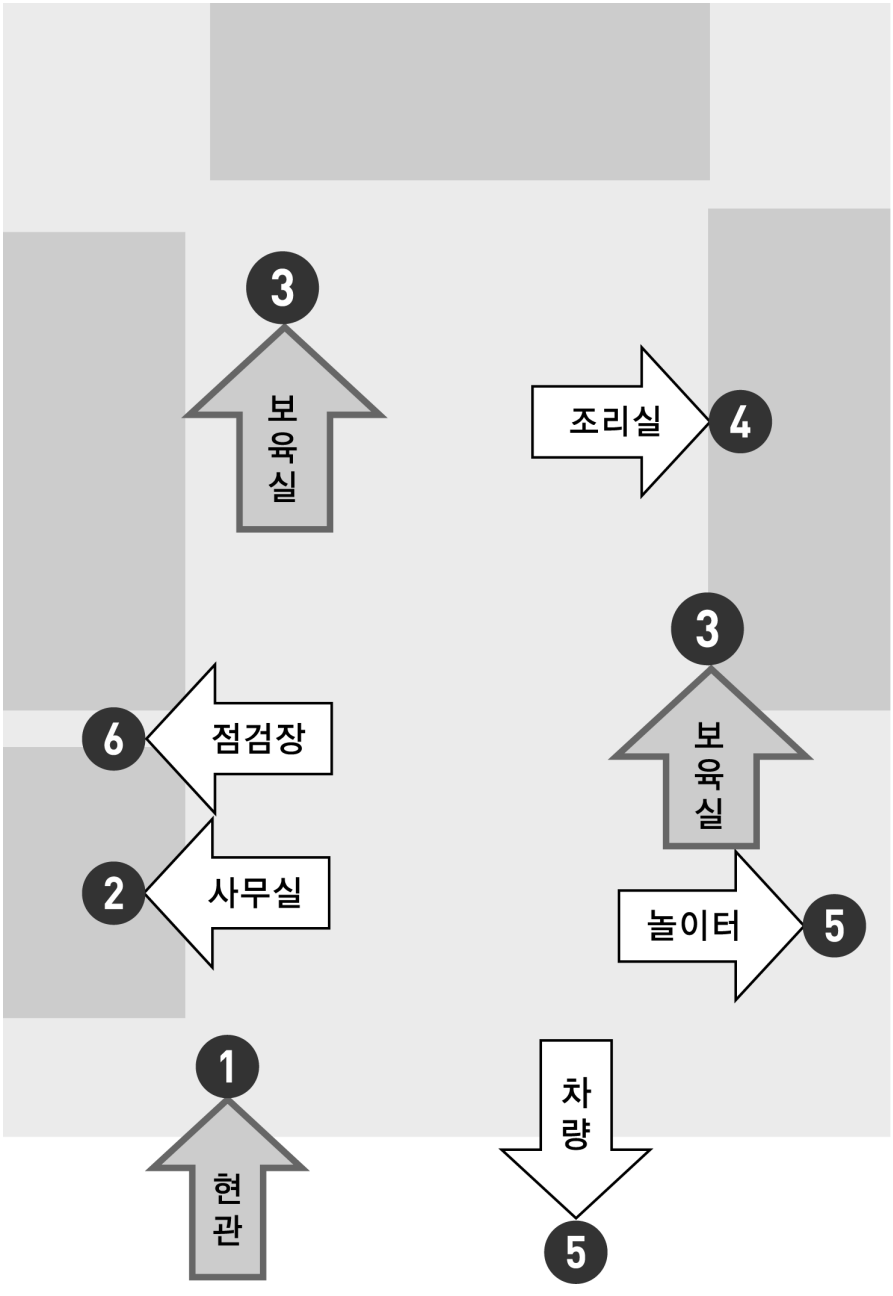

어린이집용

제3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 처분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조치/ 18
2. 행정 처분 / 19
3. 과태료 처분 / 22
4. 위반사실의 공표 / 23

제3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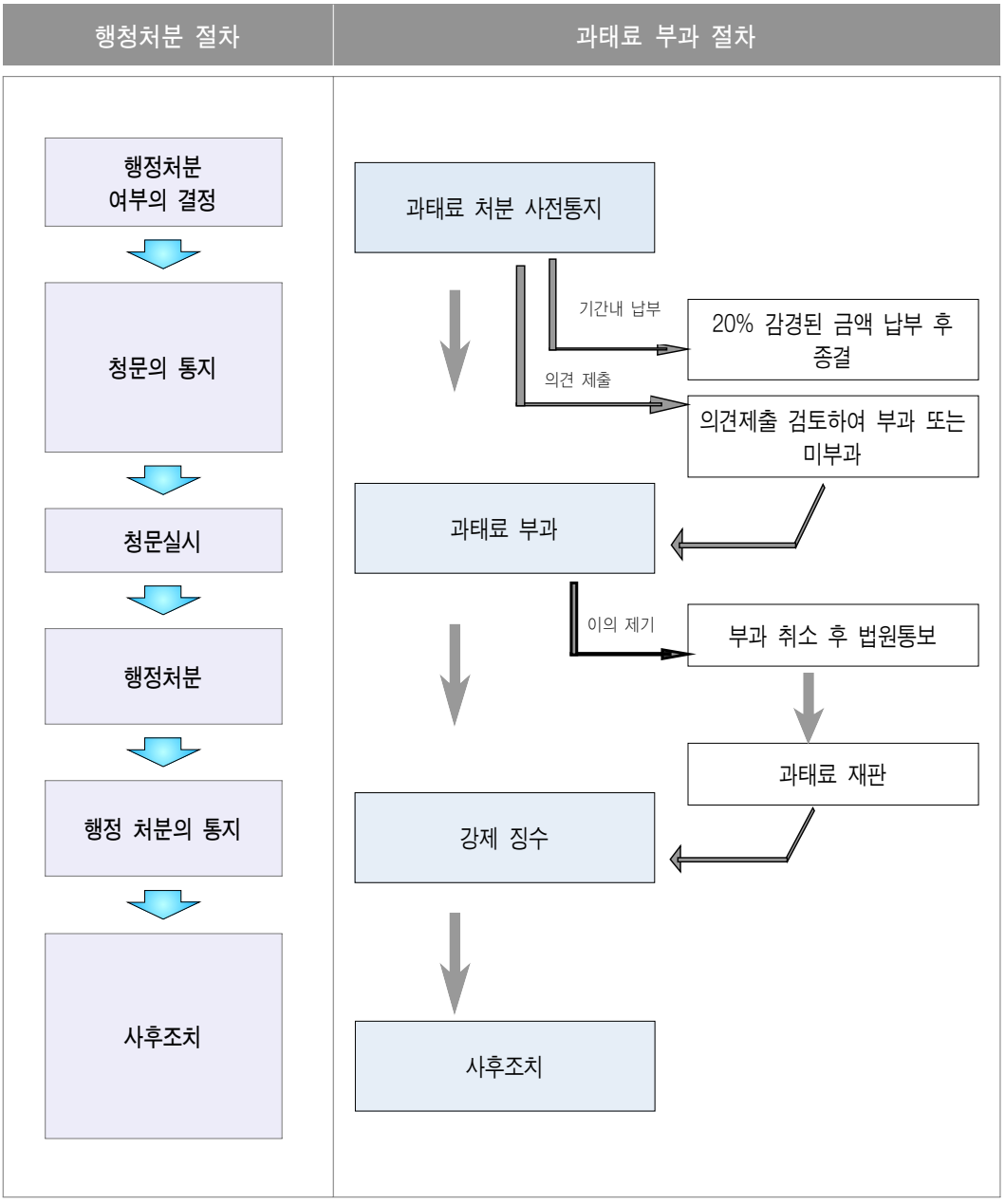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조치

가.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행정처분 병행)

- 비용 및 보조금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결정 취소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령**
  -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2.7.1 시행)

  * 근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반환

  * 근거 : 법 제40조제5호, 동 규칙 제35조의 9에서 규정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 계좌에서 반환 가능

- 의견 제출시
  - 검토조정 후 1) 반환금액 재산정 2) 재산정 금액을 확정·고지(이의신청 기회 제공) 3) 해당 시설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예정 통보금액으로 확정·고지

- 기한 내에 미반환 시
  - 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의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동법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규정에 의거,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 처리

나.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2 행정처분

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어린이집이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부모의 동의 등 특별활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4항)
  -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영유아에 대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차량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관련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폐지, 일정기간 운영중단, 운영재개를 한 경우나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운영정지, 폐쇄, 자격정지 등

● 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운영정지 등을 처분

사 유	조치사항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취소

●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예시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도시)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인접 동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 (농어촌 등) 읍 또는 면 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없는 경우, 섬 지역인 경우

예시 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대체처분 불가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
  -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학대 또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재가공하여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급식관리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 행정처분 진행 절차

①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시설폐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청문 실시

  * 근거 : 「행정절차법」제21조, 시행규칙 제8조

  * 경고'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나,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가능

-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청문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청문기관·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함

    *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② 행정처분 여부 결정

- 시·군·구청장은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여부 결정
  - 과징금 : 법 시행령 제25조의 2 〔별표 1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 시설·종사자 :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9〕 및 제39조 제38조〔별표 10〕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③ 행정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 시·군·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제24조

- 시·군·구청장은 행정처분 결정 통보시 행정처분 조치전에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전원조치 등 필요한 사항 실행(보호자 등에게 행정처분 예정 안내)

3 과태료 처분

가. 과태료 처분내역 산출

- 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6조 및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내역 산출

나.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
  -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과태료 부과

- 시·군·구청장은 제출 된 의견을 검토하여 부과여부를 확정하고, 부과 대상에게는 서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가능)으로 과태료를 부과
  -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명시*

    * 당사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시
  - 시·군·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후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법원은 과태료 재판 진행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증거서류(원본 또는 등본 등)

라. 과태료 경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가능.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

4 위반사실 공표

가. 관련법령

- 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법 시행령 제25조의 6 및 제25조의 7**

나. 명단 공표 주체 및 심의 주체

- 명단 공표 : 시·군·구청장
- 대상 선정 :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명단 공표 대상과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 심의 : 연 4회(1차 4월초, 2차 7월초, 3차 10월초, 4차 익년도 1월초)

다. 선정 절차

- 사전심의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장은 ’13. 12. 5일부터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시설(자)를 명단공표 심의대상으로 선정
    ① 보조금 부정수령·유용한 어린이집
    ② 어린이집 운영기준(법 제24조), 급식기준(법 제33조)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를 발생시킨 어린이집
    ③ 「아동복지법」제17조(아동학대)를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원장이나 보육교사
    *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라. 재심의

- 공표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이나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거쳐 공표여부**를 **결정**

마. 명단공표 내용·기간·방법 등

● 공표시기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행정처분 확정 시점	1~3월	4~6월	7~9월	10~12월
공표시기	5월중	8월중	11월중	익년도 2월중

● 공표내용

공표대상	공표내용
어린이집	- (법)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어린이 집 종류, 주소
원장, 보육교사	(법) 법 위반 이력, 명단 (시행령) 해당 원장, 보육교사가 소속한 어린이집의 정보(명칭,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 공표기간

- (시설폐쇄·자격취소) 공표일로부터 3년간
- (시설 운영정지, 자격정지) 공표일로부터 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 공표 방법

- 처분청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관련기관 홈페이지(보육진흥원, 보육정책연구소 등)
-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방송에 추가 공표

어린이집용

제4장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1. 행정심판/ 29
2. 행정소송 / 29

제4장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1 행정심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제기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행정 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분류

- 절차 : 행정심판 접수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 심판 청구사건 재결

- 재결의 종류(행정심판 청구를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

  - (각하) 심판 청구의 요건이 부적격할 경우
  - (기각) 심판 청구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 (인용) 심판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
  - (사정) 심판청구의 내용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 될 때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 사정 재결의 경우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손해 배상 등을 해야 함

2 행정소송

-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 행위나 행정 처분 등의 시정을 법원에 요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로 구술심리, 재판공개가 원칙

- 주요 행정소송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당사자 소송)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 소송 등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이외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음

● 절차 : 소송제기 → 심리(공개심리, 구술원칙) → 판결

어린이집용

참 고 자 료

1. 영역별 지도·점검 항목 / 33
2. 지도점검 및 처분의 법적근거 / 47
3. 지도·점검 항목별 행정처분 내용 / 75
4. 어린이집 지도점검 자체 점검표 / 78

1. 영역별 지도·점검 항목

1 운영일반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운영일반"분야는 주로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어린이집 인가증 등 게시 확인	어린이집 현장점검 시 인가증(평가인증된 경우 평가인증 현판과 함께)이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방법 : 어린이집 현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현판도 함께 게시하여야 함 해설 : 인가증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은 인증현판을 입구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내·외부 ○○유치원, ○○미술, ○○영어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 할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한다.	
보육교사/ 보육아동 사진게시 확인	각 보육실 문 옆쪽에 보육교사와 보육아동 사진을 게시하여야 한다.	
	방법 : 보육실 문 옆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이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와 현재 보육 중인 아동 현황과 일치해야 한다.	
	해설 : 사진은 보육아동이나 보육교사가 변경될 때마다 수정 게시한다. 보육아동이 입소할 때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부모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다.	
반편성 현황 및 현원 확인	반편성 현황과 실제 보육 현황이 일치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편성 현황과 실제 보육현황이 일치해야 하며, 하나의 보육실에서 복수반 운영시 보육실 면적이 아동 수에 비해 충분해야 한다. 특히 상위반에 편성된 1~2월생 아동은 등록된 반에서 실제 보육하여야 한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반편성 현황 및 현원 확인	해설 : 동년도 출생아 기준(동년도 1.1 ~ 12. 31 출생아)으로 반편성을 해야 한다. 단, 1월이나 2월생 아동이 상위반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가 어린이집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 1,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12.3월 반편성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이 경우에 한하여 '13년 상위연령반 편성 가능) * '12.4.1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2월생의 신규 상위연령반 편성을 금지하고 기존 상위연령반 편성이동도 가능한 한 동년도 출생아반에 반편성을 하여야 함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감안하여 반별 최대정원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출석부 확인	출석부를 반별로 잘 기록해야 하며, 실제 보육 아동과 일치해야 한다.	
	방법 : 담당반 보육교사가 당일 출결 현황을 잘 기록해야 한다.	
	해설 : 출석부는 보육아동의 실제 입·퇴소와 보육 사실을 증빙하는 중요한 근거이므로 당일 출결 현황은 퇴근전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군구에 따라 자체 시책예산(간식비 등) 지원 근거로 출석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 부모의 입원으로 결석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결석처리 후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등록아동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과 실제 보육아동이 일치해야 한다.	
	해설 : 모든 보육아동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육아동 중 미등록된 아동이 없어야 하며, 실제 입·퇴소 현황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 기준시간 확인	주 6일, 월~금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 23조
	해설 : 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따라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가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원칙이나 표준보육과정 운영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고려하여(07:30 ~ 19:30)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 토요일 보육운영을 기피하거나 '방학' 을 실시하여 의도적으로 축소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조치 :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운영을 안 하는 경우 과태료(제56조)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현황 확인	보육계획안·운영일지 등을 통하여 특별활동을 실시여부를 기록하고,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면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특별활동비)를 수납한도액에 맞게 수납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
	해설 : 보육료를 제외한 기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고 입소료(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현장학습비 등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특별활동을 모든 아동에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특별활동 비용은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수납하고, 보호자에게 수납 내역을 명확히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취약보육 운영 현황 확인	시간연장이나 24시간 보육 등을 지정 받은 경우 각각의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법 : 시간연장이나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일지 등을 통하여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해설 :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되었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을 말한다. •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은 시간연장 기준 보육시간(07:30 ~ 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최소(21:00 이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 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취약보육 실시확인	조치 : 운영기준을 위반·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각각의 지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시정 또는 변경명령(제44조)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장부비치 여부 확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들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방법 : 어린이집 운영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적정하게 갖추고 기록·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반별 출석부, 운영일지, 회계서류 등에 원장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회계장부(수입·지출 증빙서류 포함)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함.(대표자 변경시에도 관련서류를 인수인계 조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확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시설 :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동시행령 제21조의 2
	방법 :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관련 서류(위원명단, 회의록 등)를 확인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해설 :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매뉴얼' (2010, 보건복지부)을 적극 활용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확인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동시행령 제25조의4, 제25조의5
	방법 :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사항, 예·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매월, 수시 공시해야 한다('14년 보육사업안내 참조).	

2 재무회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재무회계"분야는 보육사업안내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예결산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등 세입·세출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을 충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 총계정원장은 예산과목별로 수입·지출내역이 적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회계서류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	어린이집 예결산서는 운영현황 및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해설 :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예산(운영비)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예비비를 두는 경우 세출예산의 2%이내여야 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세출예산 중 기타운영비 편성 및 실제 적립도 적정해야 한다.(보육료 및 기본보육료의 15% 이내)	
필요경비 사용한도	• 필요경비 사용한도 : 부모로부터 받은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의 집행후 발생한 잔여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보호자에게 반환하되 총수납액의 일정비율(14%)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가)	
현금출납부	어린이집 수입·지출결의 내역이 적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해설 : 수입과 지출내역은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입력)하여야 한다. 예시 1 : 보육교사 보수교육 여비/참석자(인원수),교육기간, 출장지 등 예시 2 : 식재료비/ '12. 5.14~5.18 급식비 또는 간식비	
수입·지출 결의서	수입·지출 서류의 증빙자료(카드 전표, 구매내역서, 영수증 등)가 지출내역과 일치해야 한다	
	방법 : 수입·지출에 따른 회계처리 적정여부는 운영비계좌 입·출금 현황과 회계 장부 기록이 일치해야 한다. 특히 물품구입시 지출증빙(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이 정확히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 수입·지출에 따른 장부 및 보존기간은 5년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수입·지출 결의서	해설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비 계좌로 수납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금수납한 경우 수입결의 후 운영비계좌에 당일 입금하여야 하나 은행 마감이후 시간에 한하여는 익일까지 입금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지출결의서 1장당 1건의 지출이 원칙이나, 인건비 관련 지출서류는 1건에 여러건 함께 집행가능하며, 급식비 등 어린이집과 공동구매계약 체결 등 약정에 의거 매주 결재시는 당일 납품내역서 등을 필히 첨부하고 세금계산서(합계액)나 체크카드 영수증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수입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지출 또는 혼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품대장	비품이 비품대장에 정확하게 작성·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방법 : 비품구매시 지출증빙의 적정 및 대금지급을 확인한다.	
	해설 : 비품 또는 교재 구입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구입한 물품은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폐기 또는 멸실된 물품은 근거(사유)와 폐기일자를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확인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 보육교직원에게 매월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는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공제한 후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하여서는 안된다.	
어린이집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한개의 운영비 계좌를 통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법 : 운영에 관련된 모든 수입·지출이 운영비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반 입소료, 일반아동 보육료 및 필요경비도 반드시 운영비계좌로 입금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 특기활동비 등 보육비용을 별도 계좌로 수납하지 않도록 한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어린이집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운영통장'은 1개로 운영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 '세입·세출의 통장'도 개설 가능하다.	
	비고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는 경우 시정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대상이며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운영 정지 또는 폐쇄조치(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수납한 운영자는 법 제54조제3항제6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급·간식비 적정 집행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급·간식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방법 : 총계정원장의 연간 급·간식비 집행액을 1일 평균 이용인원으로 산정하여 급식인원 1인당 평균 지출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 급·간식비 평균 지출액 산정 시 월 평균 보육아동수와 보육교직원 수를 포함한다.	
	해설 :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보호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급·간식 비용이 지출되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고른 영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급간식자재 구매 영수증과 식단표가 가급적 일치해야 한다. *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식단표 변경시 변경된 식단으로 식단표를 수정	

3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아동·보육교직원관리"분야는 아동 정원 및 "교사 대 아동 수" 를 이행하여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보육아동 명단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현황과 실제 보육아동 현황이 일치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해설 : 시스템에 등록된 보육아동 현황을 기준으로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실제 보육아동과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이 일치해야 한다.	
보육교직원 명단별 구비서류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직원 명단과 실제 근무중인 보육교직원현황의 일치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방법 : 보육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등 임면서류를 비치.	
	해설 : • 20인 이하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다.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한다. • 100인 이상의 경우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가 있어야 하며, 40인 이상인 경우 취사부가 있어야 한다. 80명을 넘을 때마다 1인씩 추가한다. •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이거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보육경력이 불인정되며 청문 등 절차에 따라 자격취소가 결정된다. •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원장이 원장 업무를 하지 않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보육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원장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보육교사가 담당반 보육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예: 원장)를 할 경우 해당기간 근무경력 불인정 및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조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제44조), 기본보육료 지원 중단 및 환수 명의대여 위반일 경우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소(제48조) 및 벌칙 적용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초과근무수당 등), 그 밖의 근로시간,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하여야 한다.	
	해설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보육교직원 퇴직급여 적립 및 지급	퇴직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 모든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단, 2011년 이전은 보육교직원 5인 이상 시설이 해당됨) 퇴직적립금은 보육교직원 통상임금의 1/12 이상 적립하고, 보육교직원 개인별 계좌별 적립 또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가입을 권장한다.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운영자 몫의 퇴직금을 적립하는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중도인출하여 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자의 퇴직적립금은 운영비로 여입이 가능하다. 단,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 ※ 퇴직적립금 적립 현황은 매년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원장 전임(상근) 근무	원장의 전임(상근) 근무 의무	
	해설 : 원장이나 보육교사 모두 전임으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외출(출장,휴가) 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 회의, 강의, 물품구매 등 외출 사유 및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등은 할 수 없다. 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예:차량운행 등)를 겸임할 수 없다.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다만,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 포함)이내 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비고 : 20인 이상 시설의 원장이 원장 역할을 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전담할 경우 경력 불인정 및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시기 준수 및 관련 구비서류 비치	보육교직원 임면 관련 서류 구비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 제67조
	해설 : 임용 전 반드시 자격,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채용하도록 한다.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원장 자격정지(제46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소(제48조) * 특별활동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조회경력 조회결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사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해설 : 보수교육 대상이 된 원장 및 보육교사의 관련 서류를 구비한다.	
	조치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5년)이상 받지 않을 경우 원장 자격정지(제46조), 보육교사 자격정지(제47조)	
이용 신청자서류 비치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해설 :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소우선순위를 지켜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건강·영양·안전

"안전·위생관리"분야는 실내·외 보육환경,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보육아동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비상재해 대비시설 확인 및 적정성 여부	운영자는 비상재해 대비시설 현황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 파악한다.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해설 :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을 준수하여야 하며 '14년도 보육사업 안내 56~68쪽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2층과 3층인 경우 – 4층과 5층인 경우로 구분 * 어린이집이 4,5층인 경우,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비상 대피로 확인	비상대피로 및 비상대피로 도면 게시여부 등을 확인하여 비상구가 유사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방법 : 비상대피로 도면이 각 보육실 등 시설내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구가 적치물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인증 : **〈인증지표〉** 대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을 참고한다.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서류확인	놀이터 및 놀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해설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시설 검사 받아야 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대상은 정원 50인 이상 시설임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확인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아동복지법
	방법 :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소화용 기구 비치 여부	소화용기구의 적정	
	방법 : 소화기는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소화기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비상연락 체계구축 여부	인근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방법 :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유관기관 및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가 중대한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서류 확인	어린이집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방법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인적환경에 대한 부분은 보육교직원이 안전점검 방법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	
정기소독 실시 여부	조리실, 화장실 침구, 놀잇감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 조리실, 화장실, 침구, 놀잇감 등의 청결상태를 수시 점검한다. 민간 방역업체의 소독필증은 참고할 사항이며, 실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 : **〈인증지표〉** 대 5-1 2개월에 1회이상 대청소와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관련법령에 의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인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방법 : 실내공기질 측정	
	해설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리 대상이 연면적 430㎡이상의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으**로 확대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준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위반 시 벌칙(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집단급식소 신고 서류 확인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로 신고의무	시행규칙 제34조 식품위생법 제88조
	해설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급식재료 관리상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급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표기 및 유통기한 준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급식 재료 관리상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해설 :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은**〈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의해 식단표에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기재, 공개해야 하고(제5조 제3항),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제18조 제1항 제1호)	
	인증 : **〈인증지표〉** 대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에서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조리사, 영양사 면허증 확인	관계법령에 의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유자격자가 근무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법 제52조, 제96조
	해설 :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하여야 한다. 현원 100인이상 시설에서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5개 이내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 반드시 1개 시설에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 50인 미만 시설의 취사부는 조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식단표 확인	게시된 식단표와 실제 제공되는 급간식 메뉴가 일치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33조(급식관리) 시행규칙 제 34조
	해설 : 영유아를 위한 급식은 영양적 균형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직접 조리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식단을 활용하되, 특히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에게 통지하는 식단표와 제공되는 급간식 메뉴가 일치되도록 하고, 급간식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일 중식 1회 간식 2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여부 확인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여부 확인	해설 :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권장사항이 아니며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 * 미신고차량 운행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 '15.1.29부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부 문	점 검 항 목	관 련 법
(임대차량의 경우) 계약서류 확인	전세버스 운영사업자의 계약을 맺을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
	방법 : 임대운송사업자와의 운송계약 서류, 임대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서류를 확인한다.	
안전용 보호장구 장착 및 작동 여부	어린이 보호장구가 장착되어야 하며,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도로교통법 53조
	해설 :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영유아 등·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영유아건강 검진 실시여부	• 원장은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증명서 등 증명자료에 의거 영유아의 접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매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차량 운행관련 구비서류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해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건강진단서, 안전교육 이수여부,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비치하도록 한다.	
차량 안전관리 확인	차량 정기검사를 적기에 받아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해설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에 맞추어 적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평소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한다. 차량 내에 소화기와 구급상자를 비치하도록 한다.	
보험가입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원 및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아동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법률(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별도가입해야 함	

2. 지도점검 및 처분의 법적근거

※그 외 규정은 관련법 참조

1 지도점검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자료 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 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 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7조(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2 행정처분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

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

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신설 2011.12.8〉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운영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30 미만	30,000
2	30 이상 ~ 60 미만	40,000
3	60 이상 ~ 100 미만	55,000
4	100 이상 ~ 200 미만	70,000

5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6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7	400 이상 ~ 500 미만	115,000
8	500 이상 ~ 600 미만	130,000
9	600 이상 ~ 700 미만	145,000
10	700 이상 ~ 800 미만	160,000
11	800 이상 ~ 900 미만	175,000
12	900 이상 ~ 1,000 미만	190,000
13	1,000 이상 ~ 1,100 미만	205,000
14	1,100 이상 ~ 1,200 미만	220,000
15	1,200 이상 ~ 1,300 미만	235,000
16	1,300 이상 ~ 1,400 미만	250,000
17	1,400 이상 ~ 1,500 미만	265,000
18	1,500 이상 ~ 1,600 미만	280,000
19	1,600 이상 ~ 1,700 미만	295,000
20	1,700 이상 ~ 1,800 미만	310,000
21	1,800 이상 ~ 1,900 미만	325,000
22	1,900 이상 ~ 2,000 미만	340,000
23	2,000 이상	355,000

제25조의6(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하였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제25조의7(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

쳐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공표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
2.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 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2012.2.3.〉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14.3.7〉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마)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마)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2) 그 밖의 변경인가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별표 1 제1호의2에 따른 재산요건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시설폐쇄
2) 별표 1 제3호가목2)사)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3)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나)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 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제외한다)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별표 8 제1호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별표 8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나)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보육료 수납 납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라)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마) 별표 8 제2호아목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바) 별표 8 제2호자목에 따른 우선입소를 지키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사) 가)부터 바)까지의 운영기준 외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33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2)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3)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4) (1)부터 (3)까지의 급식관리기준 외의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다)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라) 별표 8 제3호라목에 따른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사.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자. 법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 법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타.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초과하여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파.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1) 3백만원 이상		시설폐쇄		
2)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하.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어린이집의 폐지		시설폐쇄		
2)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 및 재개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너.「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4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아동복지법」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폐쇄		
2)「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6호 중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중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다)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4)「아동복지법」 제17조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5)「아동복지법」 제17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더. 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영 별표 1의3의 공시정보 범위 중 같은 표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5개 이상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2)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가 5개 미만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별표 10 〈개정 2014.3.7〉

3 과태료 부과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1.1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0	500	500
마.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중단 신고를 하지 않고 인가된 어린이집을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300	500
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300	500

4 고발 및 벌칙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2011.6.7.〉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2013.1.2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2011.6.7.〉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 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 항목별 행정처분 내용

지도점검 항목	관련조문	지도점검의 내용	행정처분
어린이집 설치기준	설치인가(제13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했는지 여부	시정또는변경명령(제44조), 벌칙(제54조)
	설치기준(제15조)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시정또는변경명령(제44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점검	인원(제17조)	제17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또는변경명령(제44조)
	자격(제21조)	보육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원장자격정지(제46조), 원장·교사의 자격취소(제48조)
	원장의보수교육(제23조) 보육교사의보수교육(제23조의2)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원장자격정지(제46조) 보육교사의자격정지(제47조)
	자격증의 대여(제22조의2)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무자격자 채용 또는 타반 통합보육여부	원장·교사의 자격취소(제48조) 벌칙(제54조)
어린이집의 운영	운영기준(24조) 운영위원회(25조) 급식관리(33조) 생활기록(29조의2)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	시정또는변경명령(제44조)

지도점검 항목	관련조문	지도점검의 내용	행정처분
		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약보육의 우선실시(26조)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과태료처분(제56조) 복지부 지침('12.3)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의 우선제공(28조)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였는지 여부 민간·개인어린이집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 중단 등	과태료처분(제56조)
건강·영양·안전	건강관리·응급조치(31조)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 4의4.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제56조) 시정명령(44조)
비용	비용의 부담(3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보조금의 반환명령(제40조) 어린이집의 운영 정비 및 폐쇄처분(제45조) 과징금 처분(45조의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정지(제46조) 벌칙(제54조)
	양육수당(34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보조금의 반환명령(제40조) 어린이집의 폐쇄처분(제45조) 원장의 자격정지(제46조) 벌칙(제54조)
	서비스이용권(34조의3)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벌칙(제54조)

지도점검 항목	관련조문	지도점검의 내용	행정처분
	무상보육의 특례 (제3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벌칙(제54조)
	비용의 보조 등 (36조)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 하였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 어린이집의 폐쇄처분(제45조) 원장의 자격정지 (제46조) 벌칙(제54조)
	보육료 등의 수납 (38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벌칙(제54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40조)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의 폐쇄 (제45조)
지도감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의 신고(제43조)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시정또는변경명령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44조)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제45조)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벌칙(제54조)

4. 어린이집 지도점검 자체 점검표

1. 시설 일반 현황

어린이집명					
자체점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자	원장 성명 : (서명)				
	보육교사 성명 : (서명)				
시설특성	□ 일반 □ 영아전담 □ 장애아전담 □ 장애아통합 □ 방과후통합 □ 시간연장형 □ 휴일보육 □ 24시간				
시설유형	□ 국공립 □ 법인 □ 직장보육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정부지원	□ 지원 □ 미지원	농어촌 특례	□ 예 □ 아니오	정원/현원	/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구분	원장	보육 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치료사	운전 기사	특수 교사
인원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정보

구분	이름	총 보육경력	현 시설 임용일자	자격구분	최종 건강 검진일자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구분에는 직종(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운전기사, 사무원, 보육도우미, 기타)을 기재

4. 현원 정보

예시

연번	반명	연령	정원	현원	초과인원	담당보육교사명
1	*햇님반1*	*0세*	*3*	*3*		*이보육*
2	*햇님반2*	*0세*	*3*	*3*		
3	*달님반*	*1세*	*5*	*5*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반구성 원칙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1:7	1:15	1:20

- 단,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정원 범위내에서 0세반을 제외하고 초과보육이 가능하다.

  예시 1~2세반은 반당 2인, 3세이상반은 3인(0세반 제외)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5.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수납 현황 예시

연령	보육료 수납액	기타필요경비 수납액		
		입소료(최초1회)	현장학습비(월평균)	특별활동비(월평균)
0세	*383,000원*	*50,000원*	*없음*	*없음*
1세	*337,000원*	*50,000원*	*20,000원*	*없음*
2세	*278,000원*	*50,000원*	*20,000원*	*20,000원*

6. 장부 비치 사항

장부 종류	장부 비치 및 관리 실태		
	적정	미흡	부적정
금전/물품 출납부			
총계정 원장			
봉급 대장			
보육료 대장			
비품 대장			
수입/지출 결의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예산서/결산서			
시설연혁 증명서류			
재산목록 증명서류			
시간연장(휴일) 보육아동 현황			
아동 출석부, 생활기록부, 보육일지			
아동반편성 명부			
보육교직원자격증 사본 서류(원장 포함)			
보육계획안			
법인시설의 정관 등 관계 서류			
안전관리 서류와 사진자료 (소방점검, 소독일지, 놀이터 안전관리 일지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서류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성방법

- 적정 : 모든 장부의 비치 및 작성을 적정하게 한 경우
- 미흡 : 비치는 하고 있으나 작성이 미흡한 경우
- 부적정 :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7.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운영일반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어린이집 인가증 등 게시 확인					
	어린이집에 인가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보육교사/보육 아동 사진 게시 확인					
	보육실 문 옆에 교사와 보육 아동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연령별 반편성 준수 및 정원 확인					
	보육실 문 옆에 사진과 실제 보육아동이 등록된 명단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 15/ 4세 이상 1: 20)				
출석부 확인					
	출석부를 반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실제 보육아동 명단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보육교직원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직원과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아동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과 실제 보육아동을 확인한다.				
시설 운영 시간 확인					
	주6일, 월~금 12시간, 토요일 8시간 운영시간을 준수하는지, 연중 계속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취약보육 운영 현황 확인					
	시간연장, 24시간 보육 등을 지정 받은 시설이 각각의 운영 기준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확인					
	보육계획안, 운영일지 등을 통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면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특별활동비)를 수납한도액에 맞게 수납하는지 확인한다.				
장부비치여부 확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들이 실제로 있고 그 내용도 충실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확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부모협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 재무회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어린이집 예·결산서가 해당시설 운영현황 및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현금출납부					
	어린이집 수입·지출 관련 결의내역이 적정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입·지출 결의서					
	수입·지출 결의서의 내용과 시설운영계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대조 확인한다.				
비품대장					
	비품이 비품대장에 정확하게 작성·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확인한다.				
시설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확인					
	등록된 시설 운영비 계좌를 통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급·간식비 적정 집행 여부 확인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급·간식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아동 보육교직원보육교직원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보육아동 명단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현황과 실제보육 아동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보육교직원명단 및 실제근무 여부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직원 명단과 실제 근무중인 보육교직원 현황을 비교 확인 한다.				
원장 상근 및 겸직 면접확인				
원장이 상근하는지 질의하고 여러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거나 다른 겸직(예: 겸임교수)을 하고 있는 경우 외출 시간 등을 확인한다.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고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톤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4년도 보육사업안내 222쪽) 20인 이하 시설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가능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한다.				
보육교직원 퇴직금 적정지급 및 적립여부 확인				
퇴직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정 지급 및 적립 현황을 확인한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시기 준수 및 구비서류 비치					
	휴직, 산전후 휴가 등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대상인 원장,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한다.				
이용신청자 서류 확인					
	법 제28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이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대기 신청자 명단과 입소 순서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법 제28조에 의한 시설 : 국공립, 법인,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 - '12년부터 민간·개인도 포함				

▣ 건강·영양·안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비상재해 대비시설 확인 및 적정성 확인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실제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비상탈출구 게시 여부 및 비상구 개방 여부					
	비상대피로 확인 및 비상대피로 도면 게시여부와 비상구가 유사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서류 확인					
	놀이터 및 놀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있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서류 확인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소화용 기구 적정 비치여부					
	소화용기구가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인근소방서,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비상연락망을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서류 확인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정기소독 실시여부					
	조리실, 화장실, 침구, 놀잇감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해당시설)					
	관련법령에 의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인 시설에서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집단급식소 신고 서류 확인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영양사, 조리사 배치기준 준수여부 포함)				
급식 재료 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급식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고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다.				
조리사, 영양사 면허증 확인					
	관련 법령에 의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유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식단표 확인					
	게시된 식단표와 실제 제공되는 급간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여부 확인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한다. - 대상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한다.				
(임대 차량의 경우) 계약서류 확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용 장구 장착 및 작동 여부					
	어린이 보호장구가 장착되어있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항시 동승하는지 확인한다.				
운전자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 등 확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었으며 유효한 건강진단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성범죄경력 조회를받았는지 확인한다.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가입 여부					
차량 안전관리 확인					
	차량 정기점검 서류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 내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어린이집용)

2014년 6월 인 쇄
2014년 6월 발 행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전화 / 044)202 - 3592

인쇄처 KSP기 획
전화 / 044)866 - 0528